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2026년 5월 현재 서술형 280건, 사례형 18건 등 총 298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웹페이지 <http://easylaw.go.kr>, 모바일 앱 **Smart 생활법률**)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너지 절약



지난달 평소보다 전기를 조금 더 사용하기는 했지만, 고지서를 보니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사용량에 비해 전기요금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전기요금은 단순히 사용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항목이 합산되어 결정되며,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어 사용량이 조금만 늘어도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기사용 용도에 따른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 2026. 4. 1. 시행) 제5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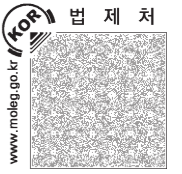
주택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56조제1항).

1. 주거용 고객(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된 지열·공기열 설비는 별도로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음)
2. 계약전력 3kW이하의 고객(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함)
3.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4.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이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함)

전기요금 계산

전기요금은 하나의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1개월마다 계산하며,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특히, 주택용전력(저압, 표준전압 100V 이상 380V 이하)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다음의 요율에 따라 계산하며, 400kWh(하계의 경우 450kWh)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어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참조).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kWh당)	
200kWh 이하 사용	910원	처음 200kWh까지	120.0원
하계: 300kWh 이하 사용		하계: 처음 300kWh까지	
201 ~ 400kWh 사용	1,600원	다음 200kWh까지	214.6원
하계: 301~450kWh 사용		하계: 다음 150kWh까지	
400kWh 초과 사용	7,300원	400kWh 초과	307.3원
하계: 450kWh 초과 사용		하계: 450kWh 초과	

※ 하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은 사용전력량에 대해 각각 기후환경요금 단가와 연료비조정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그 밖에 전기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https://online.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너지 절약

Q 에어컨을 10년 넘게 썼더니 소음도 크고 전기료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고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제품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A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여 에너지 절약과 함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 외관에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확인하여 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해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표시,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 “효율관리기자재”란 보급량이 많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 중 에너지이용합리화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조명기기, 삼상유도전동기,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호-26호) 제3조제1호 참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소비효율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최상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됩니다(「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3조제5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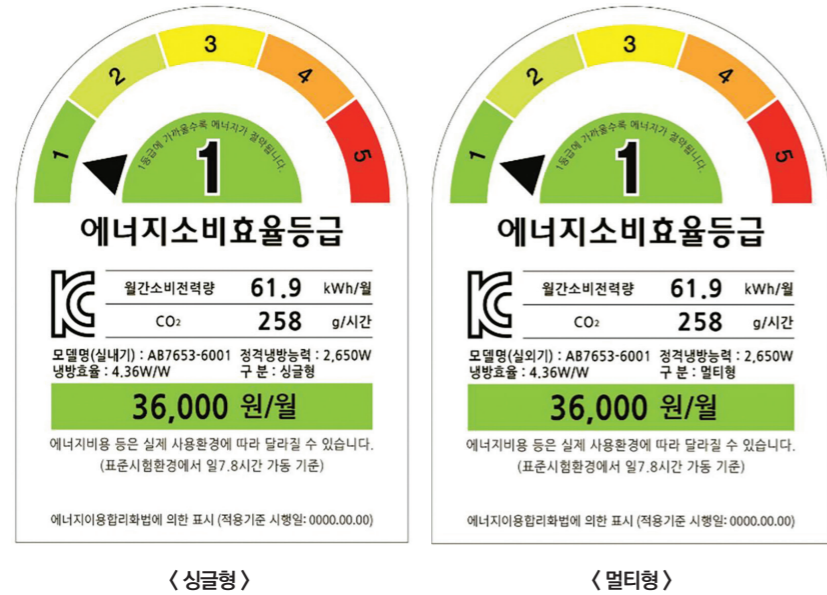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의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https://eep.energy.or.kr>) 참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의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고, 그 측정결과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 본문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5조제1항 본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할 때에는 해당 라벨에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 사용 시 CO2 배출량, 연간(월간)에너지비용 등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6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7 참조).

(예시) 전기냉방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가정에너지 절약

Q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해서 집 베란다나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볼까 고민 중인데, 초기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혹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태양광 설비 설치를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확인해 보세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태양광 설비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4호).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함)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수소에너지 설비,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수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바이오에너지 설비 등 및 그 부대 설비를 말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

태양광 등 설비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로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또는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제21조·제24조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참조).

구분	내용	
주택지원사업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기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예비입주자 대표 등
건물지원사업	지자체·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및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 소유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신청자는 매년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지원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되면 태양광 등의 설치를 완료한 후 설치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설치확인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제25조제4항).



보조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가에 따라 정액 지원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본문 참조).

※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너지 절약

Q 자원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대책 중 하나로 차량 부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량 부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A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부제가 기존 5부제(요일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한층 강화되었으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5부제(요일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 부제 운영 방법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및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11호) 제17조제1항 제4항 및 별표 9 제1장).

구분	내용
대상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서울대 및 서울대병원·치과병원
운영제한 방법	• 홀수 날(1, 3, 5, 7, 9일) :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운행
	• 짝수 날(2, 4, 6, 8, 0일) :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 운행

※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준하여 5부제 실시(정부청사 주차장 등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에 해당함. 다만,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서울대병원·치과병원의 부설주차장은 제외)

공공기관은 자원안보위기 발령 등 에너지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일부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제2).

☑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는 경우 차량 출입제한 방법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을 지정하며, 해당 요일에 해당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의 차량은 다음과 같이 공영주차장 출입이 제한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표 10 제1장).

출입제한 차량					토·일요일 및 공휴일적용 제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 6	2, 7	3, 8	4, 9	5, 0	

차량 부제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제한 등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차량 부제 참여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국민행동』(2026. 3.) 참조).



1.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 운전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타기 등
2. 회사: 적정 실내온도 준수(난방 20℃, 냉방 26℃) 불필요한 조명 끄기 등
3. 가정: 가전제품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전기차, 휴대폰 낮시간에 충전하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하고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등

가정에너지 절약

Q 직업 특성상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 최근 유가 상승으로 유류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혹시 저처럼 업무상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경차 또는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등과 같은 운송사업자는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형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1항·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1항·제3항 전단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 ✔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3항 후단).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해당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4항 전단·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5항 참조).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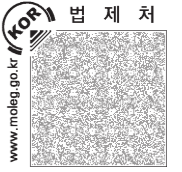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이 감면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1항).

-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면세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해당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2항 및 제3항 참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노선버스 및 택시에 사용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액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제6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1조의6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47호) 제3조제1호·제8조 참조).

- ✔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수소
- ✔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수소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세금(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액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제3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48호) 제2조·제4조제1호 참조).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연료구매카드 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해당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4항 본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1조 참조).

※ 그 밖에 유가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가보조금 포털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ug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에너지, 가정에너지, 가정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전기요금, 고유가, 차량 부제, 차량 2부제, 차량 5부제, 경차 유류세 환급, 에너지소비효율, 에너지절약형,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효율관리기자재, 태양광, 태양열, 보조금, 주택지원사업, 유류구매카드, 석유가격구조개편, 경형자동차, 전기량요금,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한국전력공사, 유가보조금, 운송사업자